

EU-러시아 에너지대화의 성과와 향후과제

Volume. 1, No. 4

2007. 7. 30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Contents

1. 에너지대화의 도입배경 및 목적 / 3
2. 에너지대화 구조의 주요 특징 / 4
3. 에너지대화의 추진경과 / 5
4. 에너지대화의 창설 및 추진방향 설정 / 8
5. 에너지대화의 추진성과 / 11
6. 에너지대화의 향후과제 / 24
7. 에너지대화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 29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EU-러시아 에너지대화의 성과와 향후과제

심 상 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요 약

- EU-러 정상은 2000.10월 파리 정상회의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양측의 모든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U-러 에너지대화(Energy Dialogue)를 설치하였음.
- 이 대화는 양측의 정상들이 정치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실무작업을 지원하며, 산업계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현실적인 협력과제를 개발하고 그 추진을 지원함.
- 러시아-EU 에너지대화는 현재까지 두 가지 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보임. 하나는 소형 협력과제의 완수로서 예를 들면 일부 가스계약의 도착지제한 규정 폐지 등임.
 - 다른 하나는 EU-러간 개방형 통합시장(common economic space)의 구축에 필요한 에너지부문의 투자, 교역 등에 대한 협력과제를 도출한 점임.
- 다른 한편으로 EU-러 에너지대화는 현재 동반자협력의 성숙단계 내지 전략적 동반자협력의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공동유럽경제권”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EU는 에너지대화를 통해 투자보증제도, 자유로운 에너지교역 제도,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에너지 기반설비 사업, 그리고 에너지효율사업의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EU-러 에너지대화는 동북아지역에 대하여 에너지협력의 내용과 메커니즘 측면에서 나침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 이 같은 여건 하에서 동북아국가와 EU회원국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1. 에너지대화의 도입배경 및 목적

● EU-러 정상은 2000.10월 6차 파리 정상회의에서 “EU-러 에너지대화(EU-Russia Energy Dialogue)”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그 설치 배경은 다음과 같음 (COM(2004) 777¹⁾, p.2).

- 유럽대륙의 동과 서는 에너지 측면에서 상호의존성이 높아 협력의 필요성이 높음. 러시아는 유럽에서 화석연료와 우라늄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며, EU는 상당량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²⁾
- 유럽대륙은 광대한 지정학적 지역으로서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EU와 러시아의 에너지부문 상호 의존성, 2000년〉

분 류	러시아	EU-25 회원국
석유 수출 또는 수입 중 러시아 비중	60%	25%
가스 추출 또는 수입 중 러시아 비중	36%	50%

자료 : COM(2004) 777, p.15

● 러시아와 EU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동반자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1997년 발효)”을 운영하며,³⁾ 양자구조인 에너지대화를 보완적으로 활용 (COM(2004) 777, p.2).

- 원자력연료 교역 이슈 등 에너지부문의 특화된 문제의 해결 필요

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 The Energy Dialogu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Russian Federation between 2000 and 2004, Brussels, 13.12.2004, (COM(2004) 777 final)

2) EU-25개국은 2000년중 에너지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였으며 2030년에 이르면 그 비중은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Christian Cleutinx의 2005.10월 발표자료).

3) EU-러는 PCA에 의거하여 EU-Russia Permanent Partnership Council, Cooperation Committee 및 Cooperation Subcommittee 등을 통해 양자간의 에너지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에너지헌장조약(ECT, Energy Charter Treaty) 등 국제조약을 통한 국가간 에너지문제의 해결이 당분간 어려운 상황임.⁴⁾
- 2000.10월 EU-러 6차 파리 정상회의의 공동합의문이⁵⁾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EU-러 에너지대화의 주된 목적은 에너지부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COM(2004) 777, p.2).
- 그러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볼 때 EU와 러시아는 생산물분배계약(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COM(2004) 777, p.2).
- EU는 역내 에너지의 정책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러시아와 에너지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관련 독서에 적시된 EU의 주요 에너지정책 과제는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원 다원화, 역내 에너지시장의 개발, 에너지공급 확보 [또는 역외로부터의 에너지공급 관리]임.⁶⁾

2. 에너지대화 구조의 주요 특징⁷⁾

- EU-러 정상회의가 에너지대화의 운영을 정치적으로 지원. EU-러 정상은 각각 1인의 에너지대화 대표자(interlocutors)를 지명하며 대표자는 양 정상회의에 진도보고서를⁸⁾ 제출함.
- 각 회원국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실무보고서(staff working paper) 또는 위원회보고서(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를⁹⁾ 통해 에너지대화의 진행에 참여함.
- 산업계의 실질적 참여
 - 에너지대화의 초창기 시, EU-러 양측의 민간 및 정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제그룹(Thematic

4) 러시아가 ECT의 기준을 미루고 있어 EU-러간에 ECT를 적용하기 어려움.

5) EU-Russia Summit: Joint Statement, Paris, 30 October 2000

6)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GREEN PAPER ON ENERGY : Four years of European initiatives, 2005, p.3

7) COM(2004) 777, pp.2-6

8) 2007. 7월 현재 7차 진도보고서(Synthesis or Progress Reports)가 제출되었으며, 6차와 7차 사이에 한 번의 중간 진도보고서가 제출되었음

9) 2007.7월 현재 12차례의 실무 또는 위원회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COM(2004) 777 final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실무 또는 위원회 보고서임.

Groups)”은¹⁰⁾ 협력분야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1차 진도[종합]보고서의¹¹⁾ 작성에 기여하였음.

- 에너지대화는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원탁회의(Round Tables)와 이에 준하는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음.¹²⁾

- EU-러 산업원탁회의(EU-Russia Industrialists' Round Table)는 지난 5차회의(2003.12월)에서¹³⁾ EU-러 에너지대화를 개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에너지업계의 고위급으로 구성될 에너지상설그룹(Energy Steering Group)의 설치를 건의하였음.

●EU-러 에너지기술센터(ETC, EU-Russia Energy Technology Centre)를 모스크바에 설립 (2002.11.5) 운영

●EU 집행위원회의 업무로서 시장감시기구(market observatory)를 설치하여 석유, 가스 및 전력 시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함.

3. 에너지대화의 추진경과

●도입합의, EU-러 6차 파리 정상회의, 2000.10월

- “에너지동반자(energy partnership)” 관계 설정

●도입점검, EU-러 7차 모스크바 정상회의, 2001.5월¹⁴⁾

- “에너지분야의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in the energy field)” 관계를 지향하며, “EU-러 양측의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10) bilateral thematic groups on the themes of strategies, technology transfer, investments, environmental questions and energy efficiency

11) EU-Russia Energy Dialogue: Synthesis Report, September 2001

12) Round Tables on Gas, Electricity, Energy Strategies, the Quality of Petroleum Products, Renewable Energy; Seminars on Energy Efficiency, Fuel Cells, CO₂ Sequestration, Biomass; and Conference on the Convergence of Energy Strategies

14) EU-Russia Summit: Joint Statement, Moscow, 17 May 2001. 동 회의에서 두 정상은 에너지 분야의 동반자 관계 및 에너지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양측의 노력에 대한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

- 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EU의 투자와 기술이전이 필수적임을 적시함.
- 양측 정상은 “공동유럽경제권(CEES, Common European Economic Space)”의¹⁵⁾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동고위급그룹(HLG, joint high-level group)”를 설치하기로 합의
- 1차 종합보고서(이하, PR1) 발간, 2001.9월
 - ※ 에너지협력 의제의 종합 발굴
- 에너지대화의 추진방향 합의, EU-러 8차 브뤼셀 정상회의, 2001.10월¹⁶⁾
- 2차 진도보고서(이하, PR2) 발간, 2002.5월¹⁷⁾
- PR2의 승인, 러-EU 9차 모스크바 정상회의, 2002.5월¹⁸⁾
- 3차 진도보고서(이하, PR3) 발간, 2002.11월¹⁹⁾
- HLG가 제출한 CEES Concept Paper 환영, EU-러 12차 로마 정상회의, 2003.11월²⁰⁾
 - 양측 정상은 “연합유럽대륙(united European continent)에 대한 비전”과 “공동유럽권(common European spaces)”을 재확인
- 4차 진도보고서(이하, PR4) 발간, 2003.11월²¹⁾
- 에너지상설그룹(ESG, Energy Steering Group)의 설치 건의, EU-러 5차 산업원탁회의, 2003.12월
 - ESG는 에너지대화의 체계 내에서 “4대 주제그룹(Four Thematic Groups)”의²²⁾ 설치를 제안하였음.

15) CEES의 기본개념은 EU-러간 보다 높은 차원의 경제통합을 의미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측의 법제도가 근접해야 함.

16) EU-Russia Summit: Joint Statement, Brussels, 3 October 2001

17) EU-Russia Energy Dialogue: Second Progress Report, May 2002

18) Russia-EU Summit: Joint Statement, Moscow, 29 May 2002

19) EU-Russia Energy Dialogue: Third Progress Report, November 2002

20) EU-Russia Summit: Joint Statement, Rome, 6 November 2003

21) EU-Russia Energy Dialogue: Fourth Progress Report, November 2003

22) Thematic Groups on Investments, Infrastructure, Trade, and Energy Efficiency

- 5차 진도보고서(이하, PR5) 발간, 2004.11월²³⁾
- 신규 EU회원국에 대하여 EU-러 PCA를 적용하기로 합의, EU-러 14차 헤이그 정상회의, 2004.11월²⁴⁾
 - 신규 회원국에 대한 PCA의 연장적용은 러시아와 CIS간에 있었던 제반 에너지계약에 대하여 EU의 관련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임.
- CES(Common Economic Space) road map²⁵⁾ 채택, EU-러 15차 모스크바 정상회의, 2005.5월²⁶⁾
 - CES의 목적은 “EU-러간 개방형 통합시장의 구축(create an open and integrated market between the EU and Russia)”임을 명시
 - CES road map은 에너지부문 등 분야별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의 협력의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 에너지협력 과제의 제시
- 6차 진도보고서(이하, PR6) 발간, 2005.10월²⁷⁾
- 에너지대화 관련 4대 주제그룹은 주제별 공동보고서를 제출, 2006.10월²⁸⁾
 - ※ 각 보고서는 4대 에너지분야에 대한 협력현황을 진단하고 건의서를 작성
- 7차 진도보고서(이하, PR7) 발간, 2006.11월²⁹⁾

23) EU-Russia Energy Dialogue: Fifth Progress Report, November 2004. 이 진도보고서는 2004년의 주요 사건으로서 ① 10개 신규회원국이 EU에 가입, ②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 ③ EU는 러시아의 WTO 가입 지지, ④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 확약을 들고 있음. 그리고 동 보고서는 EU-러 에너지대화의 성과로서 ① 장기가스계약의 중요성 확인, ② 화석연료수입에 대한 EU의 규제가 없음을 확인, ③ 러시아와 신규 EU회원국간에 체결되었던 원자력계약에 대한 양측의 확인[계약의 지속성 승인], ④ Kaliningrad Oblast(州)로의 자유로운 에너지 통과를 들고 있음.

24) JOINT PRESS RELEASE: 14th EU-RUSSIA SUMMIT (The Hague, 25 November 2004)

25) Press Release: 15th EU-RUSSIA SUMMIT, Moscow, 10 May 2005의 부속서 1. Road Map for the Common Economic Space[CES]: Building Blocks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26) Press Release: 15th EU-RUSSIA SUMMIT, Moscow, 10 May 2005

27) EU-Russia Energy Dialogue: Sixth Progress Report, October 2005

28) Thematic Groups on Investments, Infrastructure, Trade, and Energy Efficiency에는 EU-러 양측으로부터 100명 이상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공동보고서를 작성하였음.

29) EU-Russia Energy Dialogue: Seventh Progress Report, November 2006

4. 에너지대화의 창설 및 추진방향 설정

가. 에너지대화의 창설 합의와 준비 조치

- EU와 러시아는 2000.10월 정상회의에서 정기적인 에너지대화(energy dialogue)를 도입하여 EU-러간의 에너지동반자(energy partnership)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마련해 가기로 합의하였음.
- 정상회의 공동합의문은 여러 가지 공동의 관심 주제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에너지현장조약(ECT)에 대한 러시아의 비준, 투자환경의 개선을 적시하였음.
- 에너지대화의 주제그룹(EU-러의 民官전문가들로 구성)은 그 이후 에너지대화의 비전과 개념을 발전시켜 에너지대화 대표자(interlocutors) 명의로 발간된 2001.9월 종합[진도]보고서의³⁰⁾ 기초를 마련하였음.
- 제1차 진도보고서는 EU와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의 환경적 요소를 평가하고³¹⁾ 에너지부문의 공동 관심사와 전략을 평가한 후, EU-러의 장단기 협력의제[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나. 에너지대화의 추진방향 설정 (EU-러 8차 브뤼셀 정상회의)

- EU와 러시아는 2001.10월 정상회의에서³²⁾ 투자촉진, 에너지안보의 제고, 그리고 상업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제1차 종합[진도]보고서에서 제안된 협력의제를 중심으로 에너지대화의 미래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음.

30) EU-Russia Energy Dialogue: Synthesis Report, September 2001

31) 제1차 진도보고서의 에너지환경 평가 내용. ① EU 역내 시장개발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인접국에 세계 제일의 에너지시장이 형성되는 것임. 러시아는 이 시장을 통해 제품교역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음. ② EU는 러시아의 경제 및 에너지부문 구조개혁, 그리고 EU 투자의 장려 노력에 대하여 평가함. ③ 진행중인 EU 확대(enlargement)는 지리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EU-러의 장기 에너지결속을 높일 것임. ④ 新회원국에 대한 EU 역내 에너지시장의 확대는 러시아와 新회원국간에 확립된 장기 상업적 관계 위에서 이루어져 이들 국가간의 기존 협력원칙과 러시아의 범유럽 에너지시장으로의 통합을 고려할 것임.

32) EU-Russia Summit: Joint Statement, Brussels, 3 October 2001, p.2, pp.7-10

●실천 가능한 단기 가능 협력 분야³³⁾

- 에너지 생산 및 수송을 위한 법적 기반 개선
- PSA에 대한 규제조항 완비
- 에너지부문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로서 기본적으로 행정 및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지향
- 에너지수송의 물리적 네트워크 확보
 - EU는 수출 네트워크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음.
 - 석유·가스 기반설비(infrastructures)에 대한 사고방지 및 누수점검을 위한 지역 위성 감시 시스템의 개발 타당성 검토
- 장기계약 및 에너지시장의 중요한 역할을³⁴⁾ 인식함과 동시에 장기 에너지공급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 러시아는 장기 “take or pay”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특정의 신규 수송 기반설비는 상호간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그 사례는 다음과 같음.³⁵⁾
 - EU-러 간의 전력망 연계
 - northern trans-European gas pipeline
 - Yamal-Europe gas pipeline network through Belarus and Poland
 - Shtokman gas condensate field 개발

33) 제1차 종합[진도]보고서에서 건의된 사항중 정상의 공동합의문에 제외된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음. ① 러-EU의 높은 에너지 의존성과 보완성을 고려하여 상기 종합보고서는 유로(Euro)를 에너지교역의 기준통화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였음. ② 신규 수송기반설비의 사례와 관련하여 EU역내로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종합보고서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카스피해 북부 석유의 수송(transit of north Caspian oil)이 중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이 석유수송을 위해 러시아의 기존 및 신규 송유관, 미래의 Burgas(불가리아)-Alexandroupolis(그리스) 송유관을 언급하였음. ③ EU-러는 수송 및 통과 문제에 대하여 2002년말 이전에 협력 논의를 시작해야 함. ④ EU-러는 에너지 생산 및 수송의 법적 기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말 이전에 실태를 파악해야 함. ⑤ 러시아가 EU 전력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종합보고서에 나열된 사항중 원가근거 요금제도(cost-based pricing)는 공동합의문에서 제외되었음. ⑥ 투자촉진을 위한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언급은 공동합의문에서 빠졌음.

34) 시장기능과 계약제도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35) 기반설비 사업과 그 노선의 선택은 관련 국가 및 회사의 결정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가스 기반설비 사업 관련, 러시아는 Kobrin-Velke Kapoushany 가스파이프라인의 추진에 우선을 두고 있음.

- Druzhba oil transmission system과 Adria oil network를 Belarus와 Ukraine을 경유하여 연계
-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절약의 중요성 측면에서 러시아의 Arkhangelsk와 Astrakhan 지역의 시범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유럽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동 사업의 상세계획은 2002년 중 제시되어야 함. 이 사업은 향후 다른 지역협력사업의 토대가 될 것임.
- EU는 에너지현장조약이 에너지 생산국, 통과(transit)국, 소비국 간의 에너지협력을 규정하는 법적 체계임을 들어 동 조약과 통과의정서(Transit Protocol)의 비준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되어야 함을 건의하였음.
- 추가 조사 및 기술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협력 분야
 - 非 상업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투자지원제도의 가능성
 - 러시아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유인으로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메커니즘 활용 가치
 - 모스크바에 러-EU에너지기술센터(Russia-EU Energy Technology Centre)의 설립을 통해 에너지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
 - 전력공급에 대한 특정조건으로서 예를 들면 러시아의 전력설비 요구능력 구축, 환경보전 대책, EU 회원국에 준하는 원자력안전 대책 등에 대한 협력
 -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동추진 가능성, 특히 교토의정서의 공동이행메커니즘(joint implementation mechanism) 체계 하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한 러시아의 사업목록 발굴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을 위한 훈련계획
- 이상의 장·단기 협력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EU-러는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에너지산업,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및 전문가의 공동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함.
- EU-러는 에너지대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PCA에 의거하여 고위급 에너지협력위원회(Committee on Energy Cooperation)의 설립에 합의

5. 에너지대화의 추진성과

가. 에너지안보 정책 분야

의제분야	에너지 법·제도
의제	에너지 탐사·생산·수송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체계 개발

논의동향

- 동 의제의 법적 체계 개발은 장기과제로 인식하여 추진함 (PR2).
- 관련 주요 이슈로는 분쟁조정절차, 시장접근, PSA의 적용대상 매장량, 투자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체제 등 (PR3).
- 해외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에너지가격이 자본 및 변동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책조정이 필요함 (PR3).
- EU의 평가에 의하면(COM(2004), 777, pp.7-8) 러시아의 에너지부문 개혁은 에너지교역의 안정, 투자촉진 등에 도움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 非에너지부문으로 경제구조의 다원화에 기여할 것임.
 - 특히 중요하게 언급한 에너지부문 개혁 대상은 자연독점의 관리, 가격구조, 천연자원에 대한 조세임.

의제분야	에너지 법·제도
의제	PSA의 법적 지위 및 체계 개선

논의동향

- 동 의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공동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 (PR2).

주요성과

- PSA에 적용할 러시아의 조세체계 도입 (PR3).

의제분야	에너지 법·제도
의 제	에너지헌장조약(ECT)의 비준

논의동향

- 러시아의 에너지헌장조약 비준은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아울러 에너지의 자유로운 교역과 통과를 보장하는 것임 (PR1, PR3 등).

의제분야	에너지계약 조항
의 제	“take or pay” 조항

논의동향

- 장기 “take or pay” 가스계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기로 합의 (PR2, PR4).

의제분야	에너지계약 조항
의 제	도착지제한(destination clauses) 규정

논의동향

- 동 규정은 향후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 (PR2).
- 상기 제한 규정은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EU의 경쟁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이 되어야함을 강조 (PR3, PR4).³⁶⁾
 - ※ 러시아는 장기가스계약이 EU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봄 (PR3).

주요성과

- ENI(이태리)와 Gazprom은 2003.10.6일 가스계약사항 변경에 합의 (COM(2004) 777, p.7,

36) EU의 경쟁원칙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으로 요약될 수 있음 (COM(2004) 777, p.7).

European Commission 문서 IP/03/1345).

- ENI는 이태리 밖으로 수입가스를 재판매 할 수 있으며, Gazprom은 ENI의 동의 없이 이태리의 다른 회사에 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음.

- EU(competition commissioner)와 알제리(에너지 · 광업장관)는 도착지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윤 배분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음.³⁷⁾

의제분야	에너지계약 조항
의 제	수입국[EU]의 수입제한 조치

논의동향

- 러시아는 EU 또는 회원국이 에너지자원 수입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제한을 두는 의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양측은 면밀히 조사하기로 합의 (PR2).

의혹해소

- 전문가회의에서 EU에 그러한 조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 (PR3).

의제분야	에너지수송망 관리제도
의 제	에너지수송 기반설비의 안전 및 안보 확보 체계

논의동향

- 감시기구 체계의 도입에 합의 (PR2). EU는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는 감시기구를 브뤼셀에 설립하려는 의도를 보임 (PR3)

37) <http://www.forbes.com/feeds/afx/2007/07/11/>, EU, Algeria agree on clauses in Sonatrach gas supply contracts, 2007.7.11

의제분야	에너지수송망 관리제도
의 제	에너지수송망의 비차별적 접근을 위한 제도 및 규칙 확립

논의동향

- 중요성 강조 (PR2). 수송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은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 (PR3).

의제분야	석유시장의 공동평가
의 제	석유시장의 공동평가 및 시장감시기구 설치

논의동향

- 석유시장 관련 건설적인 대화의 필요성 인식. 석유시장의 불확실성과 급격한 가격변동은 EU 및 러시아 경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함 (PR2, PR3).
- 생산국과 소비국간 [정책]대화의 예상주제 (PR2). ① 시장안정의 제고방안 예를 들면, 시장변동성에 대한 석유재고의 기능 평가, ② 국제석유시장 상황의 공동 평가, ③ 공급안보의 제고정책, ④ 신뢰성 높은 시장가격지표의 개발
- 석유시장감시기구(observatory for monitoring the oil market)의 설치. EU는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의도를 밝힘 (PR4).

의제분야	원자력에너지 협력
------	-----------

논의동향

- 원자력에너지의 협력 필요성.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EU와 러시아 양측 모두에 중요함. 러시아와 EURATOM의 원자력안전협력협정(2001.10월)³⁸⁾ 원자력에너지 협력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함 (PR4).

38) agreement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safety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EURATOM, October 2001

● 제안된 주요 협력 어젠다

- 원자력에너지 개발, 안보 개선, 핵연료주기 개선, 방사성폐기물 처리, 핵확산방지 관련 이슈, 핵물질 관리 등 (PR4).
- EU와 러시아는 양측의 원자력전문가가 2003년말 이전에 원자력협력 공동프로그램의 제안서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음 (PR4).

주요성과

- EU-러 양측은 핵융합원자로 ITER을 유럽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ITER기구의 2005.6월 결의를 환영 (PR6).

의제분야

에너지 정책 및 산업 협의회

주요성과

- 러-EU 공직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시장의 투명성, 시장개방, EU 확대의 영향 등 주요 이슈를 다루기로 함 (PR3).
 - 러시아는 특히 EU의 전력 및 가스 시장개방이 러시아의 연료·에너지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 (PR3).
- EU-러 산업원탁회의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EU-러 에너지회사의 고위급 대표자로 구성되는 에너지상설그룹의 설치를 건의 (PR4).
 - 에너지상설그룹은 4대 주제그룹의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이 주제그룹은 각각의 EU-러 공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PR7).
- 에너지전략 공동분석 원탁회의(모스크바, 2003.10.17일)를 개최하여 “2020 러시아 에너지전략”과³⁹⁾ “2030 유럽 에너지 및 수송 트렌드”에⁴⁰⁾ 대하여 정책협의 수행 (PR4).

39) Russian Energy Strategy to 2020

40) European Energy and Transport to 2030

- EU-러 에너지상설동반자회의(EU-Russia Permanent Partnership Council on Energy) 개최. 1차 회의를 2005.10.3일 런던에서 개최하고 4대 주제그룹의 활동내용을 검토함.⁴¹⁾ 2차 회의는 2006.12.8일 모스크바에서 개최
- EU-러 양측은 2006.7월 G8 정상들이 채택한 “국제 에너지안보 원칙(Global Energy Security Principles)”을 환영하며 공감함 (PR7).

나. 에너지안보 하부구조⁴²⁾ 분야

의제분야	수송경로의 다원화(multiplicity)
------	-------------------------

논의동향

- 에너지수송 기반설비 사업은 본질적으로 민간기업과 회원국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EU-러는 공동이익의 추구를 위해 “독립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기반설비사업을 조속히, 면밀히 검토할 것임 (PR2).

주요성과

- EU-러는 “독립 전문가단”의 건의에 따라 northern trans-European gas pipeline, Shtokman field 개발, Yamal gas pipeline, 그리고 Adria/Druzhba network(수송망)의 추진에 중점을 두기로 함 (PR3).
- PR1과 PR2에서는 공동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주로 에너지수송 기반설비를 언급하였으나 “독립 전문가단”은 그러한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을 건의함 (PR3).
 - 기존 송유관의 개량사업이 공동이익 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 (PR4). 원유·석유제품의 철도수송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공동이익 사업 측면에서 검토 필요함 (PR5).

41) Joint EU Presidency and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on the EU-Russia Permanent Partnership Council on Energy, London, 3 October 2005

42) 에너지안보 하부구조는 에너지안보 관련 이슈 중 정책적인 것으로서 예를 들면 전략적 수송망의 건설, 안전기술 등을 의미함.

- EU와 러시아는 EU가 northern trans-European gas pipeline project의 타당성분석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점을 환영함. 이 분석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할 것임 (PR4).
- EU-러 양측은 Yamal-Europe pipeline의 확장 사업을 환영함 (PR5).

의제분야

수송기반설비의 사고방지시스템 도입

논의동향

- 석유·가스 수송기반설비에 대한 위성사고방지감시시스템의⁴³⁾ 도입 가능성을 인식 (PR2). 양측은 이의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합의 (PR4).
- 상기 시스템은 탐사, 건설, 수송, 생산지역 등 숲 에너지체인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함 (PR5).
- 위성감시시스템의 도입은 러시아의 참여를 위해 정치적 수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 (PR4).

주요성과

- 에너지부문의 위성감시시스템 구상에 힘입어 EU와 러시아는 개별 위성시스템의 호환 또는 보완적 이용에 대하여 정부간 협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성시스템의 공동개발 협력을 개시할 계획임 (PR5).

다. 투자 분야

의제분야

수송기반설비 사업의 비상업적 위험의 완화 노력

논의동향

- 열거된 대안은 ① 투자보장트러스트(Investment Guarantee Trust) 설립, ② 국제금융기구, 은행, 수출신용기관, 참여국 정부, 그리고 민간 보험사 또는 투자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한 조치 강구임 (PR2).

43) regional satellite accident prevention monitoring system

- 수송설비 관련 “독립 전문가단”은 “仲裁裁定보증기금(arbitral award guarantee fund)”의 도입을 건의 (PR3).
- 유럽투자기금(European Investment Fund)은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와 협력하여 상기 보증기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PR4).
- EU측은 [투자]보증메커니즘에 대한 초안문서를 러시아에 제시 (PR5).

의제분야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기금 설치

논의동향

- EU-러 양측은 러시아의 에너지절약 잠재력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투자 또는 보증 기금”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PR5).

라. 에너지기술 분야의 주요성과

- EU는 Gazprom과 EU-러시아가스인증센터(gas certification center)의⁴⁴⁾ 설립에 합의 (PR2).
- EU-러시아에너지기술센터(ETC, EU-Russia Energy Technology Centre)의 설립에 합의 (PR2). 러시아는 설비 등을 부담하고 EU는 최초 3년간 재정을 부담함 (PR2). 모스크바에 EU-러에너지기술센터 설립 (PR3)
 - 주요기능 : 정보교환을 위한 포럼개최, 훈련실시, 정보확산 활동 등
 - 활동분야 : 석유 · 가스, 석탄, 전력,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 효율
 - 2인 소장(EU 1인, 러시아 1인) 공동체제로 운영
- ETC의 역할은 증가되는 추세임. ETC는 원별 기능별 에너지이슈에 대하여 협력주제를 발굴,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절약, 온실가스대책, 투자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중 (PR5).

44) EU-Russia gas certification centre이며 동 센터는 현대적 효율적 가스 관련 기술을 테스트하고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TACIS⁴⁵⁾ 체계 내에서 수송망 관련 기술지원

- 수송네트워크의 복구 및 투자를 위한 평가사업 지원합의 (PR2). 이 사업으로 TACIS 2003년 프로그램이 확정되었으며 관련 총[누계] 예산은 10백만 유로(Euro)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PR3).
- “석유 · 가스 수송네트워크 감시시스템 및 현대화 계획”으로 TACIS 2004 프로그램으로 3백만 유로 상당의 기술지원 (PR5).

●TACIS 체계 내에서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지원

- 러시아의 에너지부와 에너지절약 시범사업 해당지역은 “2003년 TACIS 프로그램”에 의거 기술지원을 신청 (PR2).

마. 에너지효율 · 절약 분야의 주요성과

●시범사업 추진

- 러시아 Astrakhan 사업 추진 합의
 - 가스발전소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지역난방시스템에 온수를 공급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130MW 가스복합발전소 및 소형 CHP 건설 (PR2).
 - 위 사업에 대한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s) 준비 중 (PR3)
- 러시아 Arkhangelsk 사업 추진 합의
 - 지역난방시스템의 설비개체 사업. 지역난방시스템의 연료전환 사업 (화석연료 → 바이오매스) (PR2).
 - 위 사업에 대한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s) 준비 중 (PR3)
- 향후 러시아 Kaliningrad Oblast(州)로 절약사업을 확대하기로 합의 (PR2). 이 州의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기술조사 개시 (PR3). Kaliningrad Oblast의 에너지절약 잠재량은 35-40%에 이릅니다 (PR5).

45) Technical Aid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약어로서 EU의 지원프로그램

- 에너지효율협력과 기후변화대책의 연계. 에너지절약은 온실가스(CO₂)의 감축에 기여하므로 에너지 절약의 경제성을 제고하려면 교토의정서의 비준이 필요함 (PR2).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 (2004.11월).
- 에너지효율 관련 협력사업의 발굴. EU는 건물, 수송 및 열병합발전 분야에 있어 에너지효율 개선 경험을 러시아와 공유하려함. 우선 대상 사업으로 수송용 CNG(compressed natural gas)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 (PR4).
- “EU-러 에너지효율 공동사업(joint EU-Russia Energy Efficiency Initiative)”의⁴⁶⁾ 지속적 추진 (PR7).

바. 에너지환경 분야의 주요성과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송과 관련하여 해상 환경 안전을 최대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PR4). 원유 및 석유제품의 철도수송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함 (PR6).
 - EU는 single hull tanker의 조기 퇴역, 그리고 single hull tanker에 의한 중유 수송 금지를 제안하여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냄 (PR4).
-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력. EU-러 양측은 2005.2월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점을 환영함 (PR6).
 - 이에 따라 환경 관련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므로 기술의 개발, 적용 및 이전 관련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함 (PR6).
 - 기후대책 및 최근의 고유가에 대비하여 에너지수요의 감축, 청정연료기술 협력이 중요함 (PR6).

46) 이 공동사업은 애초 2006.2월 EU-러의 에너지장관급 회의에서 제안되었음. 이 사업의 목적, 실시분야, 사업수행형태, EU-러의 업무담당기관 등에 대해서는 http://ec.europa.eu/energy/russia/reference_texts/thematic_en.htm 중 "Final report of the Thematic Group on Energy Efficiency of the EU-Russia Dialogue," October 2006 참조

사. 에너지교역 분야

의제분야	원자력자재(nuclear materials) 교역
------	-----------------------------

논의동향

- EU는 원자력발전 연료 공급원을 다원화하기 위하여 EURATOM Supply Agency(ESA)⁴⁷⁾를 통해 수입원에 대한 공급량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EU는 러시아와의 대화에서 이의 중요성을 강조 (PR2).
 - 러시아는 동 연료교역에 대한 질적 제한은 차별적 조치임을 강조 (PR2).
- EU 신규회원국의 기존 원자력계약도 EURATOM Treaty의 적용대상이어서, 러시아와 EU 신규회원국간의 원자력계약은 사안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 EU-러간의 정책적 대화가 필요함 (PR2, PR3).
 - 상기 대화는 늦어도 2004.1.1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하며,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함 (PR4).

주요성과

- EU측은 2004.5.17일에 “원자력자재 교역에 대한 협약(안)”을 러시아에 제시하였으며, 러측은 검토 중 (PR5).

아. 에너지시장 개방·통합 분야

의제분야	시장 개방·통합의 공감대 형성
------	------------------

논의동향

- EU-러의 단계적 에너지 시장통합은 에너지안보, 사업기회 및 경쟁도 제고 측면에서 상호 순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PR4).

47)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EURATOM) Supply Agency는 EU 회원국의 사용자에게 원자력발전 연료를 주기적이며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함.

- EU 역내 에너지시장은 국제적으로 가장 개방적이며 매력적인 시장이므로 EU는 안전, 개방정도, 경쟁경쟁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 비차별적인 시장환경(a 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PR6)
 - 규제의 동질성[유사성]과 에너지수송망의 안보 및 신뢰성 제고는 EU-러의 에너지시장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이므로 정책조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함 (PR6).
- EU 역내의 전력 및 가스 시장개발 의제를 다루고 있는 포럼에⁴⁸⁾ 러시아의 정기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임 (PR4).
- 석유·가스 교역의 거래통화를 유로로 하는 것은 개별 계약당사자의 결정사항에 해당하나, 이는 EU-러의 상호 의존성 심화를 나타냄 (PR4).
- EU회원국으로 둘러싸인 러시아 Kaliningrad Oblast(州)는 가스소비의 90%와 전력소비의 95%를 EU회원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음 (COM(2004) 777, p.8).
 - 이 같은 상황은 유럽의 가스, 전력 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제분야	전력망연계
------	-------

논의동향

- 공감대 형성
 - EU-러는 CIS EPC(Electric Power Council)와 EURELECTRIC(Un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이 2002.3.20일 체결한 협력협정을 환영함 (PR2).
 - EU-러는 CIS EPC와 EURELECTRIC이 2005.6.14일에 체결한 시장 및 환경 로드맵 협정을 환영함 (PR6).
 - EU-러 양측은 CIS EPC와 EURELECTRIC이 작성한 “EU와 CIS 국가의 전력시장 조화방안”과 “EU-CIS 전력시장 통합을 위한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공동 로드맵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PR6).

48) 전력포럼은 Florence Forum of electricity regulators이며, 가스포럼은 Madrid European Gas Regulatory Forum임.

- 공동 조사·연구 사업. 사전조사가 필요함을 인식하며, 조사대상은 현실적이며 잠재적인 장애요인 파악, 기술적 사항 등임 (PR2).
- 차이점과 유사점(또는 공통점) 인식
 - 러는 연계 시 同期式 (synchronous)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PR2).
 - EU는 연계를 위해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데, 그러한 예는 시장개방, 원가근거요금정책, 환경보호 및 원자력안전 등임 (PR2).
 - ※ 러는 원자력안전이 국가의 독점적 감독기관(GosAtomNadzor)에 의해 평가되는 사안임을 지적함.
 - 전력시장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EU-러의 시장 및 환경 규정이 현재 또는 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동질인지 또는 어떻게 차별되는지에 대하여 양측은 공통된 의견을 가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PR4).

주요성과

- 전력망 연계의 물리적 전제조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술연구를 개시할 것이며, EU의 UCTE⁴⁹⁾와 러시아의 IPS/UPS가⁵⁰⁾ 공동 참여하며 TEN's가⁵¹⁾ 이 연구를 지원할 것임 (PR3).
 - 상기한 전력망 연계의 기술연구는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력망 연계와 전력시장의 통합을 추진해야 함 (PR4).
 - ※ UCTE는 2006.12월 현재 상기 과제진행의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였음.⁵²⁾
 - Ukraine과 Moldova가 UCTE의 가입을 요청하고 있어 위의 기술연구는 확대 조정될 필요성 있음 (PR7).
- 전력망연계의 물리적 전제조건이 타당할 경우 비차별적 시장접근, 원자력안전 및 환경 주제 등을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임 (PR3).

49) Union for the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f Electricity

50) Interconnected Power System/Unified Power System

51) Trans-European Networks

의제분야	가스부문 통합
------	---------

논의동향

- 가스부문의 통합은 합의된 규제원칙과 장기계약에 근거해야 하며, 그러한 통합은 가스의 공급안보를 제고하고 수송설비사업의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임 (PR4).
- 러시아는 EU 확대가 기존의 장기 가스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임 (PR4).

주요성과

- ENI와 Gazprom의 가스계약 조정, EU와 알제리의 가스계약 조정은 EU의 경쟁원칙이 적용되는 출발점이 되며, 아울러 EU의 역내 가스시장 개발에도 기여함.

6. 에너지대화의 향후과제⁵³⁾

가. 에너지절약 분야 향후과제

- 7차 진도보고서(PR7)의 합의에 따라 EU와 러시아는 “EU-러 에너지효율 공동사업(joint EU-Russia Energy Efficiency Initiative)”을 추진할 계획
- “에너지효율 주제그룹”은 사업기간 2007-2008년을 위해 16개 실행과제(action plans)를 제안하고 있는데, 주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자원 관련 ETC의 실행계획
 - 에너지효율, 난방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및 규제 제도의 공동분석
 - ※ EU와 러시아의 요금제도, 시장기능형 인센티브제도, 제도조화방안 등

52) Feasibility Study: Synchronous Interconnection of the Power Systems of IPS/UPS with UCTE, SUMMARY OF PROJECT STATUS, December 2006

53) 향후과제는 4대 주제그룹(Thematic Groups on Energy Efficiency, Infrastructure, Investments, and Trade)의 2006.10월 보고서(Reports of the joint thematic groups)를 요약한 것임 (보고서 원문은 http://ec.europa.eu/energy/russia/reference_texts/thematic_en.htm 참조)

- 러시아의 ESCO⁵⁴⁾ 도입방안 및 성과계약제도의 실시를 위한 법제도 검토
-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위한 “EU-러시아보증기금(EU-Russia Guarantee Fund)”의 도입방안 검토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교토의정서의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제도의 활용에 대한 훈련 워크숍
- 전력 및 난방 공급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시범사업의 정보교환 및 개발 협력
- 러시아의 난방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를 위한 “EU-러시아회전벤처기금(EU-Russia revolving Venture Funds)” 설치의 가능성 조사
- 적용가능한 실행과제의 경우 EU와 러시아의 에너지공급사간 파트너십 구축

나. 에너지 하부구조 분야 향후과제

- “에너지 하부구조 주제그룹”은 에너지 하부구조(기반설비)의 우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northern trans-European gas pipeline (The Nord Stream)
 - Yamal-Europe gas pipeline network through Belarus and Poland
 - Shtokman gas condensate field 개발
 - 기존 가스파이프라인의 능력 유지 및 개량
 - Bosphorus해협 석유수송 혼잡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원유송유관 건설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Burgas(불가리아)-Alexandroupolis(그리스) 라인을 지지하고 있음.
 - 러시아(Transnefteproduct社は [수출용] 석유제품수송을 위해 주된 파이프라인을 Baltic Sea

54)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와 Black Sea까지 연장할 계획임. 이 중 Baltic Sea로의 연장계획(소위 North project)이 가장 중요함.

- 유럽 전력망(UCTE)과 러시아 전력망 IPS/UPS의 同期式 연계. 이들 전력망의 非 동기식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필요

●에너지 하부구조(기반설비) 관련 향후과제

- 가스 기반설비와 관련하여 파이프라인의 설계, 건설, 운영, 진단, 감시, 보호, 해체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이 실행과제의 대상이나 특히 중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표준 및 규제의 조화
- 주배관(trunk pipeline)의 운영안전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 평가
- 가스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관련 정보 및 전망 자료를 정기적으로 교환

- 석유 기반설비 관련 향후과제

- 기존 석유수송네트워크의 능력 향상 및 개선
- Belarus와 Ukraine을 경유하여 Druzhba oil transmission system과 Adria oil network는 아직 연계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 러시아 석유정제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소요의 공동분석을 고려함.

- 전력 기반설비 관련 향후과제⁵⁵⁾

- 유럽과 러시아의 전력망 연계에 대한 타당성 연구 수행
- EU의 역내 전력시장규칙이 러시아의 에너지[전력]시장개혁과 양립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필요
- 전력망 연계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력시스템 및 시장통합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규제적 그리고 제도적 체계를 검토해야 함.

55) “에너지 하부구조 주제그룹”은 유럽과 러시아의 전력망 연계가 기본적으로 전력시장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향후과제는 전력시장의 통합을 전제로 제안한 것으로 판단됨.

- 유럽과 러시아의 전력사업 투자에 참여
- 교토의정서에 따른 사업기회의 발굴

다. 투자 분야 향후과제

- 2003년에 발간된 “러시아의 에너지전략 2020”은 2001-2020년 동안 러시아 에너지부문의 투자소요액이 2,500-3,000억 달러(2001-2010년), 4,000-5,000억 달러(2011-2020년)로 추정하고 있음.
 - 2005년에 발간된 최신자료에 의하면 2005-2015년 동안 러시아 에너지부문의 투자소요액은 2003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투자 주제그룹”은 최근의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러한 자금소요의 전액을 자체조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는 러시아가 해외로부터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해외자금은 질적으로 신기술 및 국제수준의 효율적 경영 및 시장 관리기법과 병행하여 이동되므로 러시아는 해외자금을 활용하여 에너지개발에 필요한 신기술과 효율적 경영 및 시장 기법에 접근할 수 있음.
- 따라서 러시아가 시베리아, 극동 및 북해 대륙붕 지역의 에너지를 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외자금과 국제기업의 참여가 필요함.
- “투자 주제그룹”이 제안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과제
 - 러시아의 에너지부문 투자환경 개선방안 검토. 지하자원의 이용, 조세, 수송설비 접근 시스템, 그리고 민官 협력 메커니즘(예 : 보상제도 등) 관련 구체적인 제안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목적임.
 - EU-러 공동 에너지사업 촉진. 러시아와 EU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에너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투자위험을 감축하며 사업참여 및 자금활용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
 - EU와 러시아의 상호 교차 투자.

라. 무역 분야 향후과제

●에너지교역에 대한 EU-러시아의 공통원칙

- 서로에게 이익이 되며 비차별적인 무역
- 국제무역법규의 규칙 및 원칙에 따른 교역
- 교역메커니즘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예를 들면 民官 파트너십, 도매거래허브(wholesale trading hubs), 시장규제메커니즘 분석
- 무역의 장기 안정성 및 안보 제고

●원유 및 석유제품 교역 관련 향후과제

-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시장전략 활용
 - 기존 수출능력의 최적 활용
 - swap 운영의 활용 방안 분석
- 원자재 공급자와 최종소비자의 직접대화 방안 개발

●천연가스 교역 관련 향후과제

- 천연가스 교역의 확대방안 검토
 - 계약제도 분석. 장기계약의 이용 및 개발, 저장·판매·수송 계약 등
 - 호혜주의에 의한 상호간 접근 규칙 및 메커니즘 개발. 이 같은 방안은 투자, 기반설비, 시장 및 생산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 자유무역 개념 하에서 “도매에너지교역허브(wholesale energy trade hubs)”의 개발 고려
- 유라시아 천연가스시장의 개발(development of the Eurasian natural gas energy markets)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설비사업 고려
- EU-러의 에너지무역 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상설메커니즘(joint permanent mechanism)” 설치
- EU-러 천연가스시장의 법·제도 접근성[유사성] 고려

- 석탄교역에는 현재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으나, 기후변화대책을 고려할 때 EU-러 양측은 청정석탄 기술, 광산안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등에 대하여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
- 전력 교역 관련 향후과제
 - 전력교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EU-러 전력망연계가 필요함
 - EU-러 양측은 현재 UCTE와 IPS/UPS의 同期的 연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중
 - EU-러 양측은 또한 非동기적 전력망 연계를 위해 시범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전력교역의 메커니즘과 시장규칙의 조화[접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전력 시장의 개방과 통합을 위해 관련 규칙과 규제 제도의 공통적 개혁이 필요하며 단계별 추진을 위해 로드맵의 구축 필요
- 원자력 교역(nuclear trade) 관련 향후과제
 - “원자력 교역”은 천연 우라늄, 원자력 발전 연료, 관련 자재 및 서비스의 교역을 포괄하는 것임.
 - EU와 러시아는 원자력 교역과 관련하여 조세, 허가, 인증, 그리고 事故時 책임의 범위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EU는 원자력 교역에 대하여 EURATOM Treaty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나 러시아는 PCA를 적용하려는 입장임.
 - EU-러 양측은 무엇보다도 원자력 교역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함.

7. 에너지대화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 동남아시아에는 현재 ASEAN과 러시아가 낮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EU-러시아 형태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임.⁵⁶⁾

56) Joint Declaration of the Heads of State/Government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EAN and the Head of State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Progressive and Comprehensive Partnership, Kuala Lumpur, 13 December 200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EAN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Kuala Lumpur, 10 December 2005

- 그러나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직접 참여하는 다자간 기구가 에너지협력을 다루거나, 에너지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자간 에너지협력기구가 운영되고 있음.
 - 러시아, 중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에너지협력을 모색 중임.⁵⁷⁾
 - 한국(산업자원부)은 러시아, 몽골 등과 함께 “동북아에너지협력실무협의회(Senior Officials Committee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를⁵⁸⁾ 구축하여 에너지협력을 모색 중
-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핵심중 하나는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활용이며, 러시아는 동북아국가를 미래의 에너지수출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EU 에너지 대화는 동북아에 대하여 시사점을 지님.
- (협력내용 측면) EU와 러시아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에너지 기반설비에 대한 안전과 안보 확보 방안, 그리고 국가간 에너지계약 및 에너지교역에 대한 법제도적 안정성 조치 등은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대하여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예를 들면, EU(UCTE)와 러시아(IPS/UPS)의 전력망연계에 대한 기술표준과 전력교역의 규칙 및 규제 제도의 개발은 동북아 전력협력에 대하여 훌륭한 사례를 제공할 것임.
- (협력메커니즘 측면) 동북아 국가들은 역내 에너지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EU-러 에너지대화의 의사결정 구조, 추진조직, 협력사업 추진의 시간계획(로드맵)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와 EU의 양측 최고정상들은 정상회의를 통해 에너지대화의 미래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무진행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EU-러 에너지대화의 추진조직은 다층 구조적 특징을 보임. 양측 정상들은 정치적 의지로서 대화를 이끌고 있으며, 장관급 회의는 실무진행의 책임을 지며, 산업계는 현실적인 협력의제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57) Declaration on Establishment of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June 12, 2001, Shanghai. SCO는 군사동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NATO에 대응하는 군사협력기구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58) Ulaanbaatar Statement of Senior Officials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7 November 2005

- 러-EU 에너지대화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략적 에너지동반자 협력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제개혁에 미온적인 러시아와의 협력은 시간과의 경쟁인 특징을 보임.
- (동북아-EU간 협력여건) 러시아는 유라시아대륙의 중앙에 위치하는 자원수출국이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 대하여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음.
- 이 같은 여건 하에서 동북아 국가 또는 그 협력기구와 EU는 국가간 투자보장제도, 에너지기반설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운영제도, 에너지의 자유로운 통과제도 등의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U-러시아 에너지대화의 성과와 향후과제



KEEI